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2 - 14호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풍력 및 기타 분야의 전국 권역별 사후관리 거점 기업으로 활동할 2022년 신재생에너지 설비 A/S전담업체를 공모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6. 17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2022년 신재생에너지 설비 A/S전담업체』 공모 안내

참여분야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풍력 및 기타 에너지원

수행권역

- 전국 및 24개 권역
 - 서울북부, 서울남부,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 강원북부, 강원남부, 세종, 충남, 대전, 충북, 전북북부, 전북남부, 광주, 전남북부, 전남남부, 경북북부, 경북남부, 경남북부, 경남남부, 대구, 울산, 부산, 제주

신청자격 (한 가지 이상 자격 필요)

-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정부지원사업 참여기업(에너지원별 적용)
- 공고일 기준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기업(에너지원별 적용)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 13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제조기업”
- 정부기관, 지자체로부터 인가받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협회, 사회적 기업 및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관련 협동조합

선정방법

- 평가표에 따른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을 최종 선정

역할

- 시공업체가 폐업 또는 휴업상태인 설비의 A/S수행 및 설비 점검
- 해당 권역의 사후관리 관련 회의, 조사, 비상대응체계(자연재해 등) 운영, 공단의 필요에 의한 현장조사 등에 참여

□ 인센티브

- 정부지원 및 관리 대상 설비의 A/S 수행시 '신재생 A/S전담업체 인센티브 운용 기준'에 의거 비용의 일부 지원
- '23년도 참여기업 선정 시 우대
 - * 단, 협약이후 전담업체로서 실적이 없거나, 협약해지 시 우대사항 없음

□ 제출서류

- 신재생 설비 A/S전담업체 참여 신청서 1부
-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A/S전담 인력의 사업장 4대 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확인이 가능한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 고용보험은 가입 필수
 - * A/S전담인력은 공고일 현재 고용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서류로 확인 불가시 인정 불가 및 0점 처리
 - **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신재생에너지지원별로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
 - 예) A업체가 태양광, 태양열, 지열분야의 겸업인 경우, A업체의 소속 B씨는 한 분야의 기술인력으로만 인정
 - ***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대표자와 이사는 법인등기부 등본 및 대표이사명부를 제출, 대표와 특수관계인(직계가족 등)의 경우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 특수관계를 입증할 자료 제출시 인정
 - **** 기술인력은 '22년 협약일 중 상근하여야하며 기술인력 변경 시 변경 후 60일 이내 신재생 에너지센터에 신고해야함
- 국가기술자격법상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 * 자격증 사본을 페이지당 1장씩 첨부(화질 주의, 확인불가 시 0점 처리)
 - ** 기술인력인정자격 : 기사(산업기사 포함), 기능사
- 서약서 1부
- E-MAIL(distri@energy.or.kr) 제출
- 접수확인 메일 회신 예정
- 작성양식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www.knrec.or.kr)
"자료실-공지사항"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22. 6. 20(월) ~ 7. 1(금), 18:00까지
- 방 법 : E-MAIL 접수(distri@energy.or.kr)
- 문 의 :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052-920-0754, 052-920-0777

□ 유의사항(필독)

- 공고내용 숙지미숙, 입력(기록)오류, 자료제출 등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해당 기업에 있으며, 신청 마감 후 수정이 절대 불가함
- 2022년 A/S전담업체로 선정된 기업은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A/S 고장지원접수센터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 신청서 작성내용을 허위작성 하였거나, 제출 증빙자료 등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검토에서 제외하며, 특히 허위작성일 경우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 참여제한의 불이익을 받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음
- 이 공고 내용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및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 기존 참여기업이 하자 보증기간 이후 A/S수행을 거부하거나 소비자의 해당 업체의 A/S내용 불만족으로 인한 각종 민원 발생시 A/S전담업체에 A/S를 요청 할 수 있으며, A/S를 미수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참여기업 선정 시 '사업 참여제한', '주의' 및 '경고' 등 부과 예정

□ 협약사항

- (사업수행 일반사항) A/S전담업체는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지침을 준수하고 고객 서비스에 최선을 다해야함
 - A/S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며 A/S 수행과정에서 센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함
- (사업기간) 2022년 A/S전담기업의 사업기간은 최종 선정 발표일 7일 후 부터 1년으로 하되, 사업기간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지정서에 명기되는 사업기간 변경 등을 통해 갱신가능함
- (사업수행) A/S 전담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함
 - ① 시공업체의 폐업 등으로 인해 A/S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설비의 점검 및 A/S 수행
 - ② 부품교체가 필요한 경우 최적량을 평균단가 이하로 교환
 - ③ 소유주의 요구사항에 대응하는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 ④ 신재생에너지설비 관련 현장조사 및 A/S 비상대응체계 운영

- (사업수행장소) A/S전담업체는 센터에서 지정한 권역 및 센터에서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권역의 A/S를 수행
- (사업수행관리) A/S전담업체는 A/S수행 후 즉시 수행결과를 고장접수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입력하고 분기별로 관련 증빙자료를 센터에 제출해야함 (해당내용을 근거로 “센터”는 A/S수행결과를 확인한 후 “출장비”를 지급 예정)
- (사업수행자료 제출 및 정보보안 등) A/S전담업체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센터에서 현장 확인 및 관련 자료 요구가 있는 경우 제출해야함
 -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보안을 요하는 고객의 정보를 센터의 허가없이 외부에 유출반출할 수 없음
- (자격취소) A/S전담업체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A/S전담기업의 자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특히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A/S전담업체의 자격 취소 및 차년도 A/S전담업체에 참여할 수 없음
 - ① 공고상의 협약사항 미준수
 - ② 제출한 참여신청서 및 A/S수행계획서와 같이 A/S가 수행되지 않거나 허위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 ③ 허위로 인센티브를 요청하여 수령한 경우
 - ④ A/S 수행과정에서 전담업체의 명백한 과실로 인해 공단(센터)의 명예가 훼손되고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 ⑤ 3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는 A/S 거부, A/S 장기 미수행(15일 이상 지체) 및 A/S 수행 결과를 성실히 피드백하지 않는 경우
 - ⑥ 고의적인 A/S 미수행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어 ‘주의’조치 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 ⑦ 공단(센터)에서 실시하는 현장조사, A/S관련 비상대응체계 운영 등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⑧ 협약 기간 중 보급사업 참여제한을 받는 경우
 - * 최종 선정된 A/S 전담업체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최종선정업체 협약 해지 및 추가 공모 없이 차순위 업체와 협약 체결
 - ** 협약해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A/S전담업체 협약 해지 및 게재된 홈페이지에서 삭제
- (협약사항의 해석) 본 협약사항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센터와 A/S전담업체의 합의에 따르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센터가 우선함

<첨부1>

<신재생에너지 설비 A/S전담업체 평가관련 항목별 배점 및 세부기준>

□ 평가표(100점)

평가 항목	배점기준(점)	배점(점)
① A/S전담 인력 현황 (국가 기술 자격 보유자, 기사·기능사 포함한 인력) - 6명 이상 - 5~4명 - 3~1명 - 0명(평가서 제외)	[20] 20 15 10 0	20
② '21년 고장접수지원센터 A/S 미수행 내역 * 태양광 5일/비태양광 7일 경과 건수 기준(휴일미포함) * 방문일정 조율로 인한 경과건수는 제외(단, 확인가능한 증빙이 없을 경우 불인정) - 미수행 내역 없음 - 1건 - 2~3건 - 4~5건 - 6~7건 - 8건 이상	[30] 30 25 20 15 10 0	30
③ '21년 의무사후관리 이행률 - 100% - 100%미만~98%이상 - 98%미만~96%이상 - 96%미만~95%이상 - 95%미만~94%이상 - 94%미만	[30] 30 25 20 15 10 0	30
④ '21년 고장접수지원센터를 통한 A/S 접수 후 완료기간 * 태양광 5일, 비태양광 7일 초과일부터 산정 - 총 5일~30일 이내 - 총 31일~45일 이내 - 총 46일~60일 이내 - 총 60일 이상 ex) 미수행기간이 15일인 경우 5일을 제외한 10일을 산정	[20] 20 15 10 5	20
소계		100

* A/S 미수행 내역, 의무사후관리 이행률, A/S 완료기간 3가지 항목에서 점수 산정 근거가 없는 경우 각각 20점, 20점, 15점 배점적용(신규도 해당)

① A/S 전담인력 현황 : A/S 기술인력 보유 여부확인

- 자격증 사본을 페이지당 1장씩 첨부(화질 주의, 확인불가 시 0점 처리)
- A/S전담인력은 공고일 현재 고용되어 있어야 함
- 소속증명 사본은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소속증명서 인정 불가 (0점 처리) ※ 고용보험은 가입 필수

에너지원	기술인력
1. 태양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건설, 기계, 전기·전자,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산업기사, 기능사) * 용접기사 제외
2. 지열에너지	건설, 기계, 전기·전자,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산업기사, 기능사 포함)
3. 연료전지	건설,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산업기사, 기능사 포함)이상. 다만, 안전관리 분야는 가스기사(산업기사, 기능사 포함)만 해당
4. 풍력	건설,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산업기사, 기능사)

* 기술분야는 「국가기술자격법」의 분류를 따르며,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정보(www.q-net.or.kr)에서 확인 가능

** 기술인력은 '22년 협약일 중 상근하여야 하며 기술인력 변경 시 변경 후 60일 이내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신고해야함

② A/S 미수행 내역 : '21년 고장접수지원센터 접수된 A/S 미수행 여부 확인

※ 실적은 고장접수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건을 기준으로 하며 주택/건물지원사업에 한정함('21년 1월 ~ '21년 12월까지)

③ 의무사후관리 이행률 : '21년 의무사후관리 이행률 확인

※ 접수마감일('21.5.31)까지 홈페이지에 등록·제출 한 건을 기준으로 산정

④ A/S 완료기간 : 신재생에너지설비 A/S체계운영규정 제5조(A/S처리) 5항

※ 실적은 고장접수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건을 기준으로 하며 주택/건물지원사업에 한정함('21년 1월 ~ '21년 12월까지)

⑤전담기관 및 업체는 고장접수지원센터가 통보한 A/S건에 대하여 고장접수지원센터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방문점검 등의 A/S처리를 완료하여야 하며, A/S완료 후 고장접수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신청 및 처리결과를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 업체별 담당 권역선정

- 전국 및 24개 권역별 복수(에너지원별중복 가능) 전담업체 운영
- 희망 수행권역 위주 권역별 5개 내외업체 선정
- 희망 권역 이외 권역이 선정될 수 있음

- 별 첨 1. 신재생에너지 설비 A/S 전담업체 참여 신청서 1부.
2. 서약서 1부
3. 권역별 분류표 1부. 끝.